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8. 25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8.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9.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개정이유

-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유지 일환으로 시행 중인 천연가스 버스 보급차량에 대하여 응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열악한 운수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천연가스 버스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적립금 중 환경개선 응자사업 가능 조항 신설(안 제3조)
- 환경보전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천연가스 버스 도입시 응자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1조)
- 응자조건 및 방법 신설(안 제12조)
 - 응자한도액은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 대출금리와 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함
 - 대출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을 시급고와 협약
- 응자 및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안 제1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현재 환경보전기금이 얼마 있는가?	○ 2억 8천만원 적립되어 있으며 쓸 수 있는 금액은 50%임
○ 응자기간과 금리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어야 함
○ 천연가스 버스는 몇 대 배정되었으며 가격은 얼마인가?	○ 올해는 20대이며 2007년까지 374대임. 가격은 대당 8천1백만원임
○ 천연가스 버스 운행의 도내 추진 도시는?	○ 수원, 안양, 의정부시 등임
○ 응자금리는 몇 % 받을 계획인가?	○ 도의 응자조건과 같이 할 생각이며 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 낮은 수준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 계획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별첨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용자금의 대출금리를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다른 기금에서도 없는 사항이며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370호
의결년월일	2000. 9. 5 (제80회)

제출년월일 : 2000. 9. 1

제출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정부시책에 따라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 기금의 용자기간과 용자금의 대출금리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안은 위원회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모순점이 있음

2. 주요골자

- 안 제12조제2호의 용자기간과 용자대출 금리는 시금고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안을
- 시장은 용자금의 용자기간은 8년으로 대출금리는 시금고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3% 낮게 정하며 저리용자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함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용자조건 및 방법) ①시장은 용자조건 및 방법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기금의 용자한도액은 적립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급고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한다.

3. 융자기간은 8년으로 한다.

4. 융자금의 대출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은 시급고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장은 시급고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소설)	<p><u>제12조(융자조건 및 방법) 융자 조건 및 방법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u></p> <p><u>1.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적립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u></p> <p><u>2. 융자기간과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급고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위원회에서 정한다.</u></p> <p><u>3. 융자금의 대출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은 시급고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u></p>	<p><u>제12조(융자조건 및 방법) ①시장은 융자조건 및 방법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u></p> <p><u>1. (개정안과 같음)</u></p> <p><u>2.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급고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한다.</u></p> <p><u>3. 융자기간은 8년으로 한다.</u></p>
(신설)		<p><u>4. 융자금의 대출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은 시급고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u></p>
(신설)		<p><u>②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장은 시급고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u></p>

[수정안 포함]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개선 융자사업

제6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3호는 제4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금융자 조건에 관한 사항

제11조 내지 제16조를 제14조 내지 제19조로 하고, 제11조 내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천연가스 버스 보급차량 유치 운수회사

2. 기타 시장이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융자조건 및 방법) ①시장은 융자조건 및 방법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적립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금고의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한다.

3. 융자기간은 8년으로 한다.

4. 융자금의 대출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은 시금고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장은 시금고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 및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에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 또는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

2. 융자 또는 보조금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생략)	제3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u>3. 환경개선 융자사업</u>
3.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u>2. 기금융자 조건에 관한 사항</u>
2. (생략)	3. (현행과 같음)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1조~제16조

4. (현행과 같음)

제11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친연가스 버스 보급차량 유치 운수회사

2. 기타 시장이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융자조건 및 방법) 융자조건 및 방법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적립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융자기간과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급고의 일 반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위원회에서 정한다.

3. 융자금의 대출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은 시급고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3조(융자 및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에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 또는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

2. 융자 또는 보조금지원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제19조